



國 際

動 向



수단 파리協約・PCT 加入

—1984. 4. 16 發效—

수단은 1883年 3月 20日 締結되어 1967年 7月 14日에 스톡홀름에서 改正된 工業所有權保護을 위한 파리協約과 1970年 6月 19日에 워싱턴에서 締結된 特許協力條約(PCT)의 加入書를 1984年 1月 16日 寄託했다.

上記 파리協約 및 PCT는 수단에 대하여 1984年 4月 16日에 發效한다.

수단은 파리同盟豫算分擔金 等級 VII에 속한다.

파리告示 No. 109, 1984. 1. 16
PCT告示 No. 41, 1984. 1. 16
(WIPO 提供)

스리랑카 올림픽記章保護條約加入

—84. 2. 19 發效—

스리랑카는 나이로비에서 1981年 9月 26日 採擇된 올림픽記章保護에 관한 나이로비條約의 批准書를 1984年 1月 19日에 寄託했다.

同條約은 스리랑카에 대해 1984年 2月 19日에 發效한다.

나이로비告示 No. 18, 1984. 1. 23
(WIPO 提供)

오스트리아 부다페스트條約加入

—84. 4. 26 發效—

오스트리아는 부다페스트에서 1977年4月 28

日 締結된 特許節次目的을 위한 微生物寄託의 國際承認에 관한 부다페스트條約의 批准書를 1984年 1月 26日 寄託했다.

同條約은 오스트리아에 대하여 1984年 4月 26日에 發效한다.

부다페스트告示 No. 35, 1984. 2. 1
(WIPO 提供)

第1回 WIPO 特許情報展示會

—84. 9. 26~27, 제네바國際會議場에서—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는 1984年 9月 26日과 27日 이틀간에 걸쳐 제네바 國際會議場에서 처음으로 汎世界特許情報展示會를 開催한다.

3,000萬件 以上의 特許文獻이 發刊되어 있고 每年 100萬件의 特許文獻이 增加하고 있는데다가 特許文獻은 새로운 情報와 아이디어를 包含하고 있기 때문에 技術情報로서는 核心이다.

이번 展示會의 主題는 컴퓨터데이터베이스를 利用한 特許情報 온라인檢索에 관한 것으로 特許文獻에 포함된 技術情報を 調査하기 위한 最新의 情報를 提供해 주고 案内해 줄 것이다.

國際特許文獻센터(INPADOC), 日本特許情報센터(JAPATIC), 더웬트出版社 등 12個機關이 展示하도록 招請을 받았으며 美國, 英國, 西獨, 日本 등 21個國 및 유럽特許廳(EPO)도 特許情報서비스展示를 하도록 招請받았다.

參觀費는 無料이며 午前 10時부터 午後 5時까지 열린다.

(WIPO 提供)



發明家地位에 관한 國際會議

—84. 5. 21~24 · WIPO · IFIA共同主管—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와 世界發明家協會聯盟(IFIA)은 共同으로 5月 21日부터 24日 까지 WIPO本部에서 發明家의 地位에 관한 國際會議를 開催한다.

發明活動에 관련있는 政府 및 非政府間機構와 各國 發明家協會 등이 招請한 講定인데 討議主題는 1) 社會에서 發明家의 重要性 2) 特許制度下의 發明者의 權利 3) 發明者의 保護 및 支援 등이다.

스웨덴 特許商標 100周年紀念行事

—6. 13~15 스톡홀름서—

스웨덴은 1883年에 調印된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파리協約의 當事國이었으며 스웨덴議會는 1884年에 파리協約에 符合되도록 特許商標의立法를 採擇해서 1885年 1月 1日부터 發效시켰다. 물론 이 前에도 스웨덴에서는 特許와 商標가 存在하였으나 近代的 特許와 商標의 制度가 스웨덴에 導入된 것은 1884年이다.

따라서 스웨덴은 今年에 近代的 特許商標制度導入 100周年을 맞이하여 6月 13日부터 15日까지 國際特許·商標 심포지움을 비롯한 各種紀念行事를 갖기로 하고 參加希望者를 모집하고 있다.

其他 詳細한 問議는 Secretariat, Swedish Patent Trademark Centennial, C/O Stockholms Convention Bureau, Jakobs Torg 3, S-111 52 Stockholm, Sweden으로 하면 된다.

(스웨덴 特許廳提供)

自由中國 特許·商標出願

—特許는 發明者宣誓書必要—

自由中國의 特許에는 發明, 實用新案, 意匠이 있으며 存續期間은 發明特許가 15年, 實用新案이 10年이며 意匠 5년으로 되어 있다.

出願에 必要한 書類는 1) 明細書 및 圖面 3部 2) 出願人署名의 辨理士委任狀 3) 當該國駐在 自由中國大使館의 公證을 얻은 國籍 및 企業證明書 4) 發明者署名의 宣誓書 5) 出願人이 發明者自身이 아닌 경우에는 發明者署名의 讓渡證 등인데 이 중 有效한 出願日을 얻기 위해 必要한 最小限의 書類는 1), 4), 5)의 3가지 書類이다.

주의할 점은 中國語로 翻譯한 明細書 3部가 또한 必要하며 特許廳은 有效한 出願日字를 얻기 위해 必要한 最小書類 以外의 書類를 提出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2個月間 부여해주며 出願人の 要請이 있으면 1個月間의 유예기간을 더 부여해준다.

商標登錄의 範疇에는 基本商標, 防禦商標, 聯合商標, 서비스標章이 있고 存續期間은 10年이며 10年間 更新할 수 있다.

出願書類로는 1) 出願人署名의 辨理士委任狀 2) 當該國駐在 自由中國大使館의 公證을 얻은 國籍 및 企業證明書 3) 標章 18枚 4) 指定商品明細 등이 있으며 이 중에 有效한 出願日을 얻기 위해 必要한 最小書類는 3), 4)와 이름, 住所 및 國籍을 포함하여 出願人에 대한 詳細한 内容이다.

주의할 점은 色彩商標의 경우에는 추가로 複色으로 表現한 標章 5部를 提出해야 한다.

(臺北辨理士 蔡坤財提供)